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50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109500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50289 판결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백현숙, 최우제, 유철환, 이주경, 장익준

피고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이성오

2. D조합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 2020. 4. 1.

판결 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7,665,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6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내역 중 대상토지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7. 접수 제2159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별지 제1항 내지 제5항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4185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6. 9. 13. 접수 제42194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4,77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F이 원고들, G, 피고 C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8. 1. 25.

사망하였고, 원고들, G, 피고 C이 F의 재산 중 각 1/4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 C이 2014. 5. 7. F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조합과 사이에 같은 별지 제1항 내지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이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조합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 이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증여계약서 위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현금 1,042,739,400원을 증여하여 원고들은 시가

375,894,400원인 당진시 H 전 4,844m²(이하 'H토지'라 한다)만 상속받아 결국 각

54,773,112원의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1)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 가) 적극재산 : 408,407,855원

F 사망시 적극재산이 ① 시가 375,894,400원인 H토지, ② 예금 131,264원, ③ 출자금 2,202,0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지급받은 ④ 교통사고 보험금 중 일부인 30,180,162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극재산 : 289,288,252원

F 사망시 소극재산이 ① F이 H토지를 I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은 잔존 대출금 289,140,422원, ② 지방세 147,8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생전증여재산

(1) 부동산 증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 C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그 시가는 438,184,900원이다.

(2) 현금 증여

① 원고 B의 수증액 204,763,767원

(a) 원고들은 2013. 7. 26.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중 190,000,000원은 원고 B이 증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인 29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그리고 위 증여액 19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로现价하면 204,763,767원(증여액 190,000,000원 ×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11.565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3.5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② 피고 C 수증액 없음 : 원고들은 피고 C이 (a) 이 사건 대출금 중 100,000,000원, (b) F 명의 계좌(J)에서 2013. 3. 15.부터 2013. 6. 26.까지 인출한 합계 81,000,000원, (c) F 명의

계좌(K)에서 2014. 6. 27.부터 인출한 합계 10,924,643원, (d) F 명의 계좌(J)로 2014. 7. 17. 10,285,352원, 2015. 2. 13. 30,887,246원을 각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한 위 각 금액, (e) F의 배우자 L 명의 계좌(M)에서 2014. 1. 29.부터 같은 해 3. 3.까지 인출한 31,100,000원, (f) 2017. 3. 10. F의 교통사고 보험금 140,000,000원, (g) F 명의 계좌(N)에서 2014. 6. 27. 인출한 10,357,259원 총 합계 414,554,5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C이 L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F의 재산과 무관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14호증, 을가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명의 계좌(J)에서 피고 C이 2013. 3. 15.부터 2015. 4. 15.까지 출금한 금원은 총 185,330,000원이나 입금한 금원은 총 191,000,000원인 사실, 피고 C이 F의 교통사고 보험금 중 120,000,000원을 보관하면서 F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ㄴ단1009 성년후견 절차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762,068,270원(= 적극적 상속재산 408,407,855원 + 증여현금 204,763,767원 + 증여부동산 438,184,900원 - 상속채무액 289,288,252원)이다.

2)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산정($A \times B$) F이 2018. 1. 25.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원고들, G, 피고가 각 1/4지분을 법정상속하였고,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95,258,533원($= 762,068,270원 \times 1/4 \times 1/2$)이다.

3) 특별수익액 원고 B은 위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4,763,767원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액의 특별수익액이 존재한다.

4) 순상속액(D) F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408,407,855원, 상속채무액이 289,288,252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1/4이므로, 순상속분액은 각 29,779,900원($= (적극적 상속재산 408,407,855원 - 상속채무액 289,288,252원) \times \text{법정상속분 } 1/4$)이다.

5) 유류분 부족액 $[(A \times B) - C -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 C의 유류분 부족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A	762,068,270	1/8	95,258,533	0	29,779,900	65,478,633
원고 B	1/8	95,258,533	204,763,767	29,779,900	-139,285,134	
G	1/8	95,258,533	0	29,779,900	65,478,633	
피고 C	1/8	95,258,533	438,184,900	29,779,900	-372,706,267	

6) 유류분 반환방법 및 반환범위 (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소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유류분의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나) 반환 방법

원고 A은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 C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 C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가액반환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반환범위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인 65,478,633원을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원고 B와 피고 C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분은 47,665,442원 $\{= 65,478,633원 \times 372,706,267원 / (139,285,134원 + 372,706,267원)\}$ 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47,665,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진혜

별지